

# 한국지역난방공사 특허 통상실시권 허여업체 모집 공고

한국지역난방공사 특허 통상실시권 허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1. 대상특허

순번	특허명	등록일	등록번호
1	열배관의 음극방식 전위기준 설정방식	2006.04.11.	10-0572022
2	열배관 보온재용 클레이-폴리우레탄 폼 나노복합체 및 그 제조방법	2006.07.04.	10-0599197
3	지역난방 이중보온관 벤딩용치구	2006.07.04.	10-0599203
4	간접 열수송방식을 이용한 지역난방시스템	2006.08.21.	10-0616635
5	다수의 축열조를 한 배관망에 직접 연결 및 운전할 수 있는 지역난방용 축열조 시스템	2006.09.30.	10-0633238
6	지역난방시스템의 연료펌프 트립시 스탠바이 펌프의 속응성 개선시스템	2006.12.06.	10-0657043
7	지역난방시스템	2007.01.23.	10-0675740
8	아이스슬러리 공급시스템	2007.05.02.	10-0716282
9	마이크로터빈을 이용한 지역난방시스템	2007.10.16.	10-0769118
10	지역난방용 제습냉방장치(A)	2007.10.30.	10-0773434
11	지역난방용 제습냉방장치(B)	2007.10.30.	10-0773435
12	제습 냉방기를 이용한 제습냉방시스템	2007.11.21.	10-0780068
13	지역난방의 저온저압 열공급 시스템	2008.07.28.	10-0849909
14	연돌의 자연통풍력을 이용한 풍력발전장치	2009.10.14.	10-0922806
15	가스예열장치	2010.01.07.	10-0937107
16	저온수 2단 흡수식 냉난방기	2011.03.02.	10-1020741
17	발포제 내부의 가스 시료 포집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분석방법	2011.08.19.	10-1070221
18	교반탱크를 갖는 Ice Slurry 공급 시스템	2012.04.05.	10-1135987
19	DME 연료 연소용 버너 및 그를 위한 노즐셋	2012.05.25.	10-1152001
20	지역냉난방용 제습냉방시스템의 사용자시설에 대한 미세유량 제어장치	2012.11.19.	10-1204515
21	우드칩을 보일러로 투입하는 이송 시스템	2012.12.26.	10-1218539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향후 2년내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유상) 허여 특허를 활용한 상용제품 제조 계획을 가진 사업자

3. 제출서류 : 첨부1의 신청서와 관련서류 일체

4. 선정기준 : 기술능력, 재무능력, 기술이전 신청 사유 및 상용화 계획 평가 등을 평가하여 선발(첨부2의 평가표 참조)

### 5. 선정방법

① 신청업체 서류심사 및 대상 업체 조건 확인 후, 홈페이지 통해 공고

\* 공고장소 : [사업안내] - [기술이전] - [공지사항]

② 선정된 업체는 공사와 특허 실시권 허여 계약 체결

### 6. 선정 제외 사항

① 허위 서류 제출 및 증빙 자료가 미비한 경우

\*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사에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 지정 기한 내에도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 제외

② 최근(전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인 경우 예외)

### 7. 지원신청 및 접수

① 신청 및 접수기간 : 2018. 12. 12 ~ 수시 접수

\* 특허건당 3개사 모집완료시 종료

\* 우편접수의 경우 해당일자 소인까지 유효

② 신청방법 : 첨부1의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증 교부예정이오니, 미수령시 아래 문의처로 반드시 확인요망

③ 문의 및 접수처

가. (문의) 미래개발원 연구전략부 구소연 주임(☎031-8014-9613)

나. (접수) 이메일 : kusy1756@kdhc.co.kr

우 편 : (1709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곡로 92,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 연구전략부 지식재산권 담당자앞

2018년 12월 12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 [첨부1] 기술이전 신청서

## 기술이전 신청서 (기업체용)

기술명			특허등록(출원)번호	
일반 현황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설립일		업종 및 업태	
	주 생산(취급)품		종업원 수	명
	연매출액 (생산실적)	전년도 : 당해연도 :	백만원 백만원	
R&D 현황	연구개발조직명			
	연구인력현황	명(박사 명, 석사 명, 대졸 명, 고졸 명)		
	연구 총 예산	전년도 : 당해연도 :	백만원 백만원	
산업재산권 현황	특허 건, 실용신안 건, 프로그램 건, 기타( )			
기술료 납부방법 (2유형중 택1하여 작성)	( ) 정액( 천원) ( ) 착수기본료( 천원) + 기술료율 ( %)			
실무담당자	부서 및 직위 : 성명 : 연락처 : (전화) (FAX) (e-mail)			
<p>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3. 전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1식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업 일반현황 1부.                  6. 공장등록증 또는 생산(제조)인허가 등록증 사본 1부(해당시)                  7. 당해 기술이전 관련 주요 생산설비 목록(해당시)                  8. 당해 기술이전 관련 유사제품 생산실적(해당시)                  9. 당해 기술이전 관련 유사 연구실적(해당시)                  10. 기술이전 신청사유 및 상용화 계획(별지)</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귀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기관명 : 대표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b></p>				

<별지서식>

업체명			
기술이전 신청사유	※ 해당기술이전이 필요한 사유를 가급적 상세히 기술		
상용화 전략	※ 해당기술 상용화 전략을 상세히 기술		
상용화 추진계획	추진일정		
	투입인력		
	자금조달		
	설비투자 (설비활용)		
예상매출액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첨부2] 적격심사 평가표

기술이전 신청업체 적격심사 평가표

평가기준		배점	세부평가기준	세부 배점	평가 점수
기술능력	기술인력	20	기술연구소 보유 여부 - 보유(5), 미보유(0)	5	
	제조능력		공장 등록 또는 생산(제조) 인허가 등록증 보유 여부 - 등록증 유(10), 무(0)	10	
	연구경험		유사 연구수행 실적 - 2건이상 (5), 1건(2.5), 0건(0)	5	
재무능력	경영상태 <sup>주)</sup>	30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30	
기술료*	착수기본료	20	착수기본료 유(10), 무(0)	10	
	기술료율		연간 매출액 기준 - 3%초과(10), 2~3%(5), 2%미만(0)	10	
기술료**	정액기술료		공사 산출액 대비 비율 환산 적용	20	
기술이전 신청 사유 및 상용화 계획 평가 (비계량)		30	기술이전 요청사유의 적절성 - 매우필요(10), 필요(8), 보통(6), 다소미흡(4), 매우미흡(2)	10	
			상용화 전략 및 계획의 합리성 -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10	
			상용화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10	
총계		100	-	100	
반부패 청렴활동 (비계량)		1 (가점)	반부패 청렴활동 추진 노력 - 우수(1), 보통(0.5), 미흡(0)	1 (가점)	

※ 기술료는 경상기술료 징구시\* 와 정액기술료 징구시\*\* 중 택1하여 작성

주1)경영상태(신인도)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	25	20	15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9.8	24.8	19.8	14.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24.6	19.6	14.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9.4	24.4	19.4	14.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BB0에 준하는 등급)	29.2	24.2	19.2	14.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9.0	24.0	19.0	14.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23.8	18.8	13.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25.0	20.0	15.0	11.0	7.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제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기술이전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